

제보자 보호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제보자 보호 및 제보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되었다.

제2조(적용범위)

- ① 이 규정은 임직원의 법규 또는 사규위반, 비리, 부당행위 등 비윤리행위에 대한 제보에 적용된다.
- ② 비윤리행위와 관련하여 목격 또는 인지한 직원은 윤리제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신분보장)

- ① 회사는 제보자(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 포함. 이하 같음) 및 제보내용이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하여 근무조건의 차별, 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탐문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려고 하거나 공개한 임직원 또는 제보를 이유로 하여 폭력,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한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처분할 수 있으며, 특히 피제보자가 전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제4조(예외사항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

- ① 실명이 아닌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
- ② 수사, 조사 등 필요에 의해 국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
- ③ 제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경우
- ④ 제보자 스스로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경우
- ⑤ 조사 과정상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제5조(책임 감경 또는 감면)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제보자 자신의 비윤리 행위가 발견되어 제보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제보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

제6조(허위제보) 제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경우 피제보자가 받았을 징계와 동일한 징계를 허위제보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.

부칙 (2024.06.20.)

이 규정은 2024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